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모를 정하도록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기간 변경(제2조)

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인원 변경(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제2조 관련)

1. 소방청 공무원 별도정원	3
일반직 계	3
5급	1
7급	1
8급	1
2.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 제외) 공무원 별도정원	13
소방공무원 계	12
소방경	2
소방위	1
소방장	4
소방교	4
소방사	1
일반직 계	1
6급	1
3.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 공무원 별도정원	4
소방공무원 계	3
소방위	1
소방장	1
소방교	1
일반직 계	1
연구관	1